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581호

도시관리계획(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일원 이촌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1.24., 수정가결)를 완료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2823호로 주민 의견청취(2023.10.13.~ 2023.10.26.)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.

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2월 29일
서울특별시 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①	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용산구 이촌동 일원	-	증)33,892.7	33,892.7	-

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다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라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마.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사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■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특별계획구역①	1	이촌동 400번지 일대	-	증) 12,455.9	12,455.9	현대한강아파트
		2	이촌동 411번지 일대	-	증) 12,184.5	12,184.5	동아그린아파트
신설	특별계획구역②		이촌동 193번지 일대	-	증) 3,775.3	3,775.3	강변·강서아파트

2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3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(2024.3.1. ~ 2024.3.14.)

4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

-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(☎02-2133-7146)
- 용산구 도시계획과 (☎02-2199-7412), 주택과 (☎02-2199-7362)

5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‘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→서울 소식 → 공고 →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]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